

창원지방법원 2022. 10. 26 선고 2022가단53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8. 31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1. 1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C(이하 ‘C’이라고 한다)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. 8. 26.

사임하였고, 같은 날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.

나. C은 2007. 8. 30.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시 성산구 D 공장용지 680.9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해서 2011. 7. 8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후 C은 2012. 1. 10.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50,000,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그 매매대금 중 50,000,000원은 2012. 2. 17.에, 130,000,000원은 2012. 10. 31.에 각 C의 법인통장(을 제1호증)에 입금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부터 6호증, 을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로 C에 명의신탁한 것인데,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위 돈 중 1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, 우선 이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. 하지만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면, 먼저 위 매매대금은 피고의 개인 계좌가 아니라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내역은 찾아보기 어렵다. 이러한 점과 함께 원고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(피고가 위 매매대금 중 일부 대금을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) 등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. 9. 28. 피고에 대해서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(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C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)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장재용